

**2014년도
주안6동 종합감사 결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감 사 관 실)

2014년도 주안6동 종합감사 실시결과(요약)

I 감 사 개 요

1. 감사범위

가. 수감기관 : 주안6동 주민센터

나. 감사범위 : 종합감사 [2012. 7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업무 전반]

2. 감사기간 : 2014. 10. 28 ~ 10. 30 (3일간)

3.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3명

4. 중점 감사사항

가.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나.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 여부

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라. 각종업무(서무, 주민등록, 민방위, 청소) 추진실태 등

II 처 분 요 구

1. 총 괄

행정상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건/명)	현지 조치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지급 (환급)	추징 (징수)	기타			
10	5	5	4/102	2/87	1/10	1/5	-	-	-	

Ⅲ 주 요 지 적 사 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정

-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제7항에 의하면 동장이 징구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남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주안6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이 없고 동 자체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인 동청사 방수공사 외 4건을 수강료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철저히 운영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성명변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분실)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주안6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대상인 ○○○(분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미인증 하였으며, 수수료 미징수 대상인 △△△·□□□(성명변경)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징수 대상자인 ○○○에게는 5천원을 징수하여 수수료 인증처리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자 △△△ 외 1인에게는 5천원을 환급하고, 담당자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

◆ 급량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대상으로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안6동 주민센터에서는 급량비 지출시 관련기준에 의거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등 관련 기준에 맞지 않게 회계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관련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지출을 한 사례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회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

◆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201-01)에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가

있으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주안6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커피, 차류 및 다과 등의 구입시 사무관리비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며,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집행을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관련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지출을 한 사례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

◆ 모니터 상담업무 소홀

-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읍면동 사회복지업무안내에 따르면 기존복지대상자 및 잠재적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전화, 방문, 방문형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의 변화, 기존 연계 서비스의 효과와 지속여부 등을 체크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개별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개별 복지대상자 모니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상담을 실시하고 신규복지대상자 선정, 전입, 가구원 추가 등 가구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 14일 이내 방문하여 생활실태조사(자격관련 조사가 아닌 지원사항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주안6동에서는 복지대상자의 모니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 및 신규로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 등 14명에 대해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방문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신규 복지대상자 발생 시 지원사항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잠재적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상담 후 상담내역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 관리하도록 “주의” 촉구